## 관세사배상책임보험 보고기간연장담보(ERP) 안내

법인/합동사무소의 해산, 개인사무소의 폐업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관세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담보업무	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관세사의 업무
가입기간	최대 3년까지 가입가능
보험료	1년 가입 시 : 전년도 연간 보험료의 100% 2년 가입 시 : 전년도 연간 보험료의 175% 3년 가입 시 : 전년도 연간 보험료의 250%
유의사항	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 요청하여야 하며, 보험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입 (변경 불가)